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7.

발의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권성동

강선영 · 김기웅 · 김소희

김용태 · 권영진 · 구자근

신동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, 그 후 3년간은 50%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5제1항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5제1항제1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